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9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 안철수 · 최수진 · 권영세

이종배 • 서천호 • 김태호

김선교 • 백종헌 • 김민전

송석준 · 서명옥 · 박덕흠

이용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인세법」은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세제 특례를 주고 있음.

그러나 해당 국제기구가 현행법상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정부 출연금 외 공익법인의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 하고 있음. 이처럼 공익 성격의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증여세가 부과됨으로써 민간분야의 기여문화 및 국제기부 확산에 걸림돌이 되 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의료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여세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u>갖춘 국제기구로서 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증여		
	<u>받은 재산의 가액</u>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		
	육, 종교, 자선, 학술, 의료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		
	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u>가입하였을 것</u>		